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030호

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을 개정하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8월 21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사유

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 시 필요한 도로 시설기준을 추가하여 「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」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“제4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” 신설

-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 대한 계획, 구조, 횡단구성, 교차로, 안전 및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 추가(안 제44조~제49조)
- 현행 제44조(재검토기간)을 제50조로 이동하고 재검토 기준을 변경(종전 2021년 7월 1일 → 2024년 1월 1일)(안제50조)

3. 의견제출

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.9.10(일)까지 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의견서 제출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
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		(찬·반 의견과 이유)

○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
국토교통부 도로건설과(전화 044-201-3893, 팩스 044-201-5588)
- 전자우편: kimrota13@korea.kr